

**SATZUNG**  
**des Vereins**

**Kultur Brücke Korea Deutschland e.V.**

Hannover, 00.03.2024

## 제1조 명칭, 소재 및 사업연도

- (1) 본 협회의 명칭은 "한독문화교류협회"이며 이하 "협회"로 지칭한다.
- (2) 협회의 소재지는 독일 연방 공화국 하노버다.
- (3) 협회는 2024년 3월 15일에 창립되었다.
- (4) 사업연도는 그레고리력 연도 단위로 한다.

## 제2조 목적, 목표 및 협회의 임무

본 협회의 목적은 한국과 독일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한국과 독일 간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두 나라의 우수한 인재를 교류하고, 한국인들이 독일에, 독일인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협회는 한국 이민 가족들을 위해 문화적 지원 및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이 독일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협회는 한국과 독일이 함께 새로운 문화적 및 교육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 (1) 독일 한국인 가족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국 다양한 문화의 예술과 독특성을 지원한다.
- (2) 한국과 독일의 대학, 기관 및 단체 간의 인적 및 물적 인프라를 구축한다.
- (3) 한국-독일 문화 교류 행사 및 대중교육을 진행한다.
- (4) 한국과 독일이 공동 참여하는 공동 문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실행한다.
- (5) 한국과 독일 문화 및 교육의 발전을 위한 추가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본 협회는 정치적 및 세계관적으로 중립적이다.

## 제3조 공익성

- (1) 본 협회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주로 경제적 목적이 아닌 세무법의 "비영리 목적" 섹션에 따른 공익 목적만을 추구한다 (세무법 §§ 51 및 이후).
- (2) 협회의 자금은 법률이나 정관에 따라 법적인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다. 회원들은 협회의 자금을 받을 수 없다. 협회의 목적과 무관한 지출이나 과도한 보상은 없어야 한다.

#### § 4 자금

- (1)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은 회비, 기부금 및 보조금으로 조달된다.
- (2) 회원은 회원총회의 결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의 액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회원총회에서 참석한 회원들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3) 회원의 연회비는 매년 연초에 납부해야 하며, 협회 가입 후 4주의 기간 내에, 가입 달 다음 달부터 결제되어야 한다.
- (4) 회원이 협회를 탈퇴한 후에도 발생한 회비 부채는 상환 의무가 남아있다.
- (5) 이미 납부한 연회비는 사업연도 중 협회를 탈퇴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 (6) 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개별 회원에게 회비 납부를 연기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사회적 이유로 회비를 감면하는 것도 가능하다. 회비 면제를 위한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가 공정한 재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내린다.
- (7) 협회의 명예 회원은 모든 회비에서 면제된다. 명예 회원 임명 사안은 회원총회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최종 결정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 § 5 회원 자격

- (1) 협회 회원은 협회의 목표와 목적을 지원하는 모든 자연인 및 법인이 될 수 있다.
- (2) 회원 자격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3) 입회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가 직무를 수행하여 한다.
- (4) 회원 자격 종료:
  - (A) 탈퇴:
    - i. 회원은 협회를 탈퇴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ii. 탈퇴 선언은 서면 또는 이메일로 협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 iii. 회원은 매년 12월 31일까지의 4주 전까지 회원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
  - (B) 법인의 경우, 회원 자격은 법인의 해산 또는 법인의 법적 능력 상실로 종료된다.
  - (C) 회원 자격은 회원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 (D) 제명:
    - i. 회원은 협회에서 제명됨으로써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ii. 협회를 손상시키는 행동, 특히 긍정적 채권침해 원칙에 따라 대체 책임을 지을 수 있는 행동으로 인해 회원은 협회의 회원 자격을 즉시 상실할 수 있다.
- iii. 해당 회원은 제명 결정 전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가진다.
- iv. 제명된 회원은 요청 시 다음 회원총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가진다.

## § 6 기구

협회의 기구는 다음과 같다:

- (1) 회원총회 및
- (2) 이사회.

## § 7 회원총회

- (1) 회원총회는 협회의 최고 기구이다. 이는 이사회를 감독한다. 그 임무는 법률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관할하지 않는 협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 (2) 회원총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이사회 구성원의 선출 및 파면,
  - (B) 연간 결산 및 예산안 승인 및 이사회 해임,
  - (C) 회원비의 결정,
  - (D) 정관 변경,
  - (E) 협회의 해산.
- (3) 회원총회는 이사회가 제출한 연간 보고서를 기반으로 협회의 활동 및 작업 계획 개요에 대해 논의한다.
- (4) 회원총회는 최소한 매년 한 번 (정기 회원총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또한, 회원 1/10이 목적과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사회에 요청한 경우 회원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 (5) 회원총회에 대한 초대는 최소한 예정된 날짜로부터 네 주 전에 서면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전자우편) 회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기간은 이사회가 초대장을 발송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초대장은 회원이 협회에 알려준 마지막 주소로 보내진 경우로 간주된다. 또한, 협회가 정기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예: 사무실)가 있으면 회원총회의 일정과 함께

회원총회의 공지를 모든 회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6) 각 회원은 추가 안건을 포함시킬 수 있다. 신청은 서면으로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신청은 회원총회 일정의 두 주 전까지만 제출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일정을 보완하고 일정 변경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회원총회는 회원의 10% 이상, 그러나 최소한 세 명의 참석자가 있는 경우에만 결의할 수 있다. 결의불능이 확인된 경우, 동일한 안건으로 최소한 네 주 후에 두 번째 회원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회원총회는 참석한 회원 수에 관계없이 결의 가능하다.

(8) 회원총회의 결정은 투표한 의사에 따라 간주된다. 투표가 동등한 경우 제안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정관 변경은 투표한 의사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9) 연간 결산 검토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원총회는 회원 중에서 두 명의 감사를 선출한다.

(10) 회원총회는 1. 회장이나 그의 부재시 2. 회장 또는 다른 이사회 구성원이 직접 이끈다. 이사회 구성원이 없는 경우, 회원총회가 지도자를 선정한다.

## § 8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원총회에서 선출된 세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1. 회장,

B. 그의 대리인으로서 2. 회장,

C. 회계담당자.

협회는 법적 및 법률적으로 각각 두 명의 이사회 구성원이 공동으로 대표한다.

(2) 이사회는 두 년의 임기로 회원총회에서 선출되며 새로운 이사회가 선출될 때까지 이어진다. 선출은 익명 투표가 제안되지 않는 한 공개 투표로 이루어진다. 선출을 위해서는 투표한 의사의 간단한 다수가 필요하다. 재선출이 가능하다.

(3)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포함하여 직무 분담을 규정하는 사무규정을 마련한다:

A. 협회의 현업 운영,

B. 모든 협회 활동의 지도 및 감독,

C. 계약 체결 및 해지,

- D. 회원총회를 위한 연간 보고서 작성,
- E. 매년 예산안 작성,
- F. 협회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자산의 책임, 관리 및 입증,
- G. 다른 협회 또는 기관 및 조직과의 의사소통,
- H. 필요시 협회 목적을 위해 인력 및/또는 외부 회사 선택 및 검토,
- I. 회원총회 개최 및 그 결의 실행

이 사무규정은 정관의 일부이다.

- (4) 대표자는 항상 이사회 의회장과 다른 이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이어야 한다.
- (5) 이사회는 투표를 통해 간단한 다수결로 결정을 내립니다. 투표 결과가 동률일 경우 결정이 취소됩니다.
- (6) 이사회 회의는 1차 의장이 주도하며, 그의 부재시 2차 의장이 이를 대신합니다. 이사회 회의 결정은 증거 목적을 위해 기록되어 회의 주재자에 의해 서명되어야 합니다.
- (7) 긴급한 경우, 이사회 회의 결정은 모든 이사회 회원이 서면, 전화 또는 온라인 방법으로 사전에 이 절차에 동의한 경우 서면, 전화 또는 온라인 방법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 (8) 이사회 구성원은 자신의 활동에 대한 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 이사회는 자원봉사로서의 이사회 활동 외에도 "문화 교량 한독협회"의 직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용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 (10) 이사회 구성원은 이사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심각한 의무 위반 또는 적절한 업무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이사회 구성원을 유지함으로써 협회에게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을 때 "중요한 이유"로 각각 또는 모두 회원총회에서 그 직무에서 해임될 수 있습니다.
- (11) 이사회는 임무 수행을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며, 이를 소집하고 주관하는 것은 회장이 책임집니다. 소집 기간은 세 일입니다. 회장은 일정을 명시하지 않고도 구두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만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결정은 투표 결과의 과반수로 내려집니다. 이사회 구성원 수가 짝수인 경우, 동점이 발생하면 회장의 투표가 이중으로 계산됩니다.

## § 9 회계 감사원

연례 회원 총회에서는 두 명의 회계 감사원이 두 해 동안 선출됩니다.

회계 감사원의 임무는 영수증 및 그 정당한 기록, 자금 사용의 검토 및 매년 지난 연도의 재무 상태를 적어도 한 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계 감사원은 회계 감사 결과를 회원 총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 10 회의록

모든 회원 총회에는 회의록이 작성됩니다. 회원 총회의 결의사항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회의록은 회의록 작성자가 작성합니다. 회의 주재자는 회의록 작성자를 지정합니다.

각 회원 총회 회의록은 회의 주재자와 회의록 작성자 양쪽에서 서명됩니다.

각 회원은 회의록을 열람할 권한이 있습니다.

#### § 11 책임

협회의 책임은 이사회 구성원의 고의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의무 위반으로 제한됩니다.

기관의 과실행위나 이행보조자에 대한 어떠한 유죄도에 대한 책임은 면제됩니다.

또한 협회 회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협회 또는 행동하는 협회 회원에 대한 경우, 피해자는 협회를 대표하는 사람의 과실과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협회 회원, 특히 이사회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면제됩니다.

#### § 12 기부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관들은 기부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기부자의 범위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 § 13 협회 해산

협회의 해산은 § 9 조 5항에서 정한 투표 다수결로만 회원 총회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회원 총회가 다르게 결정하지 않는 한, 1차 의장과 2차 의장이 공동으로 대표인 해산자입니다. 전항의 규정은 협회가 다른 이유로 해산되거나 그 법인성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협회의 해산 또는 세금 혜택을 받는 목적이 없어지는 경우, 협회의 재산은 공익적이고 자선적이며 종교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 14 종결 규정

본 규정은 2024년 3월 15일 하노버에서 "한독문화교류협회" 협회 창립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